

수 신 경기도 소재 PL단체보험 가입업체 대표(이사)
(경유)

제 목 「경기도 제조물책임(PL)보험료 지원사업」 신청안내

본회는 경기도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「제조물책임(PL)보험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,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지원대상 :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,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(단, 2023. 4. 11 이후 계약이 개시 또는 초회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조건 / 지원금 수령 후 중도 해지시 지원금 환수 조치)
2. 지원금액 : 납부 보험료의 20%이내, 업체당 최대 100만원 이내
(※단, 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,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)
3. 신청기간 : 2023. 5. 11(목) ~ 5. 17(수) 18:00 까지
4. 제출서류 : PL보험 지원신청서, 기업명의 통장사본(*붙임 참조)
*PL홈페이지(www.plkorea.com) 고객센터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
5. 문의 및 제출처 :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(☎02-2124-4351, 4353)
- 제출방법 : 팩스(0502-397-0200) 송부

붙임 : 2023년 지자체 PL보험지원 신청서(경기도) 1부. 끝.

중소기업중앙회장



과장 부대송

전결
실장 05/09
홍정호

협조자

시행 PL손해공제실-193 (2023.05.09)

접수

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, 3층 / www.kbiz.or.kr

전화 02-2124-4353 전송 02-761-6644 / freezen@kbiz.or.kr / 부분공개